

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(안)

의안
번호

162

발의년월일 : 1993.
발 의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담추진 기구 및 인력이 내무부 지기 12200 - 44('93.2.3.)호로 승인 되어
-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사업소의 설치목적, 위치, 업무 또는 단장보직명칭과 공무원정원등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사업소 명칭 : 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
- 위치 : 충북도청내 설치
- 업무 : 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설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. 단지조성, 분양 관리 등
- 단장 : 지방부이사관
- 공무원정원 :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함
- 설치기한 : '94.12.31까지 한시적 설치

□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0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제3항
- 지방자치단체의지방공무원정원기준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8항 및 제12조 제2항.

□ 예산상황 : 해당없음.

□ 기타참고자료 : 별첨

청주신산업기술도시건설기획단설치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"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설기획단"(이하 "기획단"이라 한다)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기획단은 충청북도청내에 둔다.

제3조(업무) 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.

1. 청주신산업기술도시 건설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
2. 유치기업 선정, 협약, 시설지도, 지원
3. 각종사업추진협의기구 조직운영
4. 토지거래 관리 및 국공유 재산관리
5. 토지감정, 보상및 주민이주 종합대책 수립집행
6. 단지조성사업 추진및 지구내 공사설계.시공 지도감독
7. 단지조성에 따른 각종 용역사업 추진 및 사업시행자 지정
8. 단지분양 공급 및 용지관리대책
9. 단지내 공공시설및 부대시설 시공관리
10. 도시시설의 기본협약서 작성운영
11. 각종대형사업의 홍보및 연구개발성과 관리
12. 기타 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제4조(단장) ①기획단에 단장을 두며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.

②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.감독한다.

제5조(공무원) 기획단에 단장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직급별 정원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폐지조례) 이 조례는 1994년 12월 31일 이를 폐지한다.